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13호
- 나. 제 안 자 : 김형재 의원(찬성자 27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2. 제안이유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울시립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3,699점 중 750점은 진품 보유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작가가 본인 작품을 기증 혹은 판매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소장가, 기관·단체, 화랑 등을 통해 구매한 작품들은 진품 보증서가 없다면 ‘위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조례 내에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만에 하나 소장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4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중 진품보증서가 없는 작품에 대한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음.

이는 시장이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고,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개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

(2) 소장 미술품의 진품보증서 관리 현황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진품 유입을 위한 내부규정¹⁾을 2010년도에 제정하였으며, 구매 미술품에 대한 진품보증서²⁾ 및 진위감정서³⁾를 징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전체 소장 작품 3,727점 중 약20%에 해당하는 742점⁴⁾의 작품이 진품 보증서 또는 진위감정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3) 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진품을 소장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없으나,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⁵⁾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이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고,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적합함.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작품계약 등) ② … 진품의 유입을 위해 작가 본인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경우, 진품보증서(규정 제7호 서식)를 징구할 수 있으며, 작고 작가일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서를 징구할 수 있다. …

2) 작가 본인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경우 직접 발급

3) 작고 작가일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발급

4) 2025년 1월 22일 기준

5) 「미술진흥법」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의 대한 집행부의 수정 의견 중, ‘진품보증서’ 및 ‘진위 감정서’를 상위법에서 규정⁶⁾하고 있는 ‘진품보증서’와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수정제안 >

현행	개정안	수정제안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생략) <신설>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소장 작품에 대한 <u>진품보증서</u> 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u>진위 감정서</u> 를 요구해야 한다.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u>진품증명서</u> ----- ----- ----- ----- ---- <u>이에 갈음하는 증명서</u> ----- -----.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정의견은 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장 작품의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감안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전체 소장 작품 3699점 중 750점⁷⁾의 진품보증서가 없으며, 이 중 57점은 구입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아 위작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6) 「미술진흥법」 제16조(소비자 보호) 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2024년 11월 기준

특히 2010년 구매 작품 6점 및 2012년 구매 작품 2점은 진품 유입을 위한 내부규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진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작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보유하는 것은 관리 및 보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이며 이를 전시하는 것은 공공미술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장 작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확보를 권고함.

다만, 작품의 손상 및 감정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감정이 불가능한 소장 작품의 경우에는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에 대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241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형재 의원	2025. 2.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정 필요성〉 ○ 미술관 소장 작품의 진품보증서 및 진위감정서를 구비하도록 하여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 입법 요지〉 ○ 시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4조 제3항)				
추진경과	○ '25. 2. 3.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기존 소장 미술 작품의 위법상태 우려(강행규정 → 노력 의무 규정) - 보유작 중 약 750점의 진품보증서(감정서)가 부재한 상황으로, 확보에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작품별 진품보증서(감정서) 확보가 곤란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법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공인된 감정기관(한국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협회)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감정이 곤란한 경우 등 - 또한, 진품보증서가 미확보되는 경우 지속 소장할 명분 상실로 소장작을 처리하여야 하나, 향후 감정기술 발전시 진품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기존 소장작품의 진품증명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5개년<'26~'30년>간 매년 150점씩 총 750점)				
	○ 미술진흥법의 용어(진품증명서) 사용 및 진품 확인하는 서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추가) - 원안의 진품보증서를 2024년 7월에 신설된 미술진흥법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수정 - 진위·진품을 감정하는 자 및 서류는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 가능함 ※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①유족의 확인, ②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감정도 진품 확인 방법에 포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 향후 감정기술 발전시 재검증할 수 있으며, 수증작 감소·기증문화 축소 등에 저해 없이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 가능				
대응방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박성은(☎2133-4183)	담당	정익승(☎2133-4237)